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화 물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표한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20.2.20)」 후속조치를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제 운영 실효성 제고방안(’19.12.23)」을 통해 권고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 정비(제13조의2)

- 1)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신고포상금에 대한 운영 결과 평가 및 운영방식 점검 등을 위하여 각 시·도에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시 행정처분 강화(별표1, 별표4)

-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해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고속
도제한장치 해제·조작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 제20호 및 21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제2호 표의 제10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별표2 제2호 표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7호의2				
1)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			
2)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를 제외한 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500			

별표 2 제2호 표의 더목9) 과징금의 금액란 중 “60”을 “120”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1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 개별기준의 제15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 표의 제10호차목의 처분기준란 중 “운행정지(90일)”를 “감차 조치”로 하고, 같은 호 제10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	---

별표 5 제2호차목1) 중 “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제10호어목, 별표4 제2호제10호타목, 별표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1 제2호제10호어목, 별표4 제2호제10호타목, 별표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생략)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 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 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u> <u>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u> <u>발한 경우</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⑥ <u>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u> <u>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u> <u>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u> <u>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설치·운</u> <u>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u> <u>례로 정한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	⑦ ----- 제6항까지----- -----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연 락 처	(044) 201 - 4017